

# 朝鮮後期 鄉校의 靑衿儒生

尹 熙 勉

I. 머릿말

IV. 靑衿錄의 變化

II. 儒生의 名稱

V. 맺음말

III. 靑衿錄의 入案方法

## I. 머릿말

본고는 조선 후기 향교의 兩班儒生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조선시대 향교의 학생은 校生이라 한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兩班들은 校生 대신 儒生이라는 이름으로, 또 靑衿錄이란 儒生名簿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향교에 출입하고 관여를 계속하였다.<sup>1)</sup>

본고에서는 兩班들이 왜 靑衿錄을 작성하고 儒生이라 칭호하게 되었는지, 靑衿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節次에 의해 入案하였는지, 그리고 조선후기의 신분제 변동, 향촌질서 변화속에서 靑衿錄의 추이는 어떠한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밝혀보려고 한다.<sup>2)</sup>

1) 筆者는 <朝鮮後期 額內校生>(《東亞研究》13輯, 1988)이라는 논문에서 校生과 儒生의 分化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본고는 조선후기의 향교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校生에 이어 儒生에 대해 밝혀보려고 작성한 것이다.

2) 조선후기 향교의 儒生에 대한 논문으로 崔允燦 「高敞鄉校 東·西齋 儒生案에 대한 검토」(《宋俊浩教授停年紀念論叢》, 1987)가 있다. 이 논문은 전라도 高敞 鄉校에 소장되어 있는 靑衿案, 西齋案의 특징을 소개하고, 靑衿案 入錄者들의 신분을 族譜를 통하여 검토한 것이다. 결론은 청금안에 入錄된 儒生들은 高敞地方의 유력한 양반가문출신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생의 신분해명에 지중한 나머지 정작 校生이 아닌 儒生으로 호칭되었던 이유, 入錄方法과 자격, 청금록의 시대적 추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종래에 거의 외면하다시피한 향교의 儒生 및 향교와 兩班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 II. 儒生의 名稱

조선후기 향교에서 東齋에 출입하며 靑衿錄에 入案하는 兩班들은 靑衿儒生(東齋儒生), 庶孽·平民으로 西齋에 출입하는 사람을 西齋校生(額內校生)으로 구별해서 부르고 있었다.<sup>3)</sup>

兩班들의 향교회피는 각종 기록에서 언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원인이 지적되고 있으나<sup>4)</sup> 兩班들이 향교를 회피하였다는 것은 향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외면하였다는 것이지 향교에 출입도, 간여도 도의시하였다는 것은 아니었다. 柳壽垣의 《迂書》에

서울과 지방에는 모두 靑衿錄이 있어 士族의子弟들을 선택하고 있고, 또 西齋를 설립하여 庶民의子弟를 거처케 하고 있다.<sup>5)</sup>

儒生이 靑衿錄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入學하고 있다.<sup>6)</sup>

고 한 것처럼 兩班들은 (東齋)儒生이라는 이름으로 靑衿錄을 작성하고 향교에 출입하고 있었다. 이는 오늘날 각 향교에 남아있는 《儒生案》과 《校生案》을 비교해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儒生案은 靑色表紙에 靑衿錄, 靑衿案, 靑衿儒生案 등의 이름으로, 校生案은 黃色表紙에 西齋案, 西齋校生案, 校案, 西齋儒生案 등의 이름으로 되어있다.<sup>7)</sup> 말할 것도 없이 靑衿錄은 양반신분의 東齋儒生 명단을, 校生案은 非兩班身分의 西齋校生 명단을 수록한 것이었다.<sup>8)</sup>

3) 《雜同散異》鄉校約令, 《校院矯弊節目》

4) 尹熙勉, 〈앞의 논문〉, pp. 3~4

5) 《迂書》卷 2 論學校補選之制

6) 《迂書》卷 2 論揀門閥之弊

7) 金鎬逸, 〈朝鮮後期 鄉校調查報告〉《韓國史學》5, 1983.

\_\_\_\_\_, 〈朝鮮後期 鄉校調查研究〉《中央史論》4, 1985. 에서 조사된 향교 典籍目錄 및, 《全南의 鄉校》(全南道廳 鄉土文化叢書 28輯, 1987)의 각 향교 儒生案 참조.

8) 崔允櫟, 〈앞의 논문〉註 2), 3)

그러면 兩班들이 校生, 校生案 대신에 儒生이라 이름하고 靑衿錄을 별도로 작성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또한 언제부터 이러한 구별을 시작하였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향교에 남아있는 靑衿錄과 靑衿錄이 작성되기 전에 만들어진 儒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 예로 順天鄉校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順天鄉校에는 1661년(顯宗 2년)부터 1881년(高宗 18년)까지 220년에 걸쳐 45件的 儒案, 靑衿錄이 남아 있다. 그 가운데 靑衿錄이 처음 나타나는 肅宗 4년 까지의 儒案, 靑衿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 順天鄉校 儒案, 靑衿錄 入案者 數

번호	年 代	名 稱	儒生·校生の 區分  및 數					계	
			靑衿	上額	中額	下額	童蒙		別儒
①	1661년(현종 2)	儒 案		37	45	55	58		195
②	1667년(현종 8)	別 儒 案						37	37
③	1678년(숙종 4)	靑 衿 錄	51						51

우선 1661년의 儒案 ①을 보면 137명의 校生과 58명의 童蒙<sup>10)</sup>名單이 수록되어 있다. 順天은 府로 校生の 定額은 70명인데 儒案에는 두 배 가까운 137명의 校生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校生이 上額·中額·下額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이다. 이는 마치 成均館에서 生員, 進士는 上齋, 四學에서 入學한 儒生은 中齋, 일반 寒散儒學은 下齋로 구분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sup>11)</sup> 곧 校生の 上·中·下額 구분은 이들 校生の 出身身分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9) 順天鄉校, 〈儒案〉(《全南의 鄉校》, pp. 493~508)

10) 童蒙은 校生이 되기 전에 향교, 書堂 등에서 공부하던 16세 이하의 學童을 말한다. 童蒙은 18세기 이후에는 額外校生の 하나로 이용되었다. (肅實 10 肅宗 6, 10. 辛未)

11) 「國學生進爲上齋 四學儒生入成均則號爲中齋 閑散儒學爲下齋」(《雜同散異》鄉校約令)

이들 儒案 ①의 校生身分을 알아보기 위해 別儒案 ②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②는 赴學案으로 鄉試에 응시한 科試生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었다. 別儒案 37명 가운데 儒案 ①과 공통되는 이름이 18명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18명은 모두 上額에서만 확인될 뿐이고 中額·下額에 있는 이름이 別儒案 ②에 보이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儒案 ①과 靑衿錄 ③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17년의 시간간격, 이름의 改名 등으로 비교하기에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7명이 공통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7명은 모두 ①의 上額에서만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상 順天鄉校의 靑衿錄이 작성될 무렵의 儒案을 비교해 본 결과 上額에 수록된 校生만이 兩班儒生의 명단이라는 靑衿錄에, 科舉應試者의 명단인 赴學案에 수록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高敞鄉校의 儒案을 보도록 하자. 高敞鄉校에는 1646년(仁祖 24년)부터 1774년(英祖 50년)까지의 10件的 儒案, 靑衿錄이 보관되어 있다.<sup>12)</sup> 이 가운데 靑衿錄으로 구별되어 작성되는 肅宗 2년까지의 3件的 儒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2〉 高敞鄉校 儒案, 靑衿錄 入案者 數

번호	年 代	名稱	儒 生 · 校 生 의 區 分 및 數							계
			靑衿	老儒	額內	額外	童蒙	業儒	入格	
①	1646년(仁祖24년)	儒案			23	9	3	11	6	52
②	1660년(顯宗元年)	儒案		3	20	11	13			47
③	1676년(肅宗 2년)	別案	46							46

〈표 2〉에서 보듯 高敞鄉校의 경우는 靑衿錄이 작성되기 전까지 校生이

12) 全北大博物館《高敞地方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 1984에 儒案의 목록이 조사되어 있고, 靑衿儒生의 명단은 《高敞鄉校誌》(高敞鄉校刊, 1965)에 수록되어 있다.

額內·額外 등으로 구별되어 있다. 이는 仁祖 19년 7월 忠淸監司 鄭良弼의 啓에

臣이 일찌기 본 즉 兩南의 각 읍에서는 額內, 額外校生, 童蒙으로 구별하여 儒라고 이름하는 자들은 모두 校籍에 올리고 있었읍니다.<sup>13)</sup>

라고 한 그대로였다.<sup>14)</sup> 儒案과 靑衿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儒案 ②와 別案 ③(靑衿錄)을 비교해 보면 ②의 額內 20명 가운데 9명이 ③의 別案에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額外 11명 가운데 ③에 보이는 이름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高敞鄉校의 경우는 額內로 구분된 校生만이 靑衿錄에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다음은 潭陽鄉校의 儒案을 보도록 하자. 潭陽鄉校에는 1650년(孝宗 元年)부터 1801년(純祖 元年)까지 모두 41件的 儒案, 靑衿錄, 靑衿隨行案이 남아있다.<sup>15)</sup> 이 가운데 靑衿錄이 처음 보이는 肅宗 2년까지의 儒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儒案 ①을 보면 앞서의 順天鄉校처럼 校生이 額內(上額)·中額·下額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① 이후의 ②~③ 儒案들은 中額·下額의 구분이 아니고 앞에서 본 高敞鄉校의 경우처럼 額內와 額外로만 구분되어

13) 《學校謄錄》卷1 辛巳(仁祖 19년) 7월 3일

14) 이 儒案에서의 業儒는 有蔭子弟를 말하는데(承 8 仁祖 3, 8, 8) 家系上으로 額內校生과 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業儒 11명 가운데 두 명은 儒案 ②의 額內에 수록되고 있다. 그리고 入格은 鄉試에 합격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도 家系上으로 액내교생과 차이가 없다. (崔允樸, 〈앞의 논문〉 pp. 267~268)

業儒, 入格이 왜 校生의 명단을 담은 儒案에 기재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仁祖 3년의 「號牌事目」에

「凡儒生必名屬學校 雖初試入格 亦屬學校 不入者 雖儒生以閑良書之」(《號牌事目》(奎 12344))

라 한 것과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15) 潭陽鄉校, 〈儒案〉(《全南의 鄉校》 pp. 374~398).

《靑衿隨行案》이란 新任監司나 守令이 향교에 謁聖할 때 함께 참석한 儒生들을 기록한 명단으로, 그 人員도 《經國大典》에 규정된 校生定額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上同書 p. 374의 〈表〉 참조)

〈表 3〉 潭陽鄉校 儒案, 青衿錄入案者 數

번호	年 代	名稱	儒 生 · 校 生 의 區 分 및 數						계	
			青衿	額內	中額	下額	額外	老儒		童蒙
①	1650 年(孝宗元)	儒 案		45	5	24			74	
②	1656 年(孝宗 7)	儒 案		69			30		99	
③	1657 年(孝宗 8)	儒 案		65	3		29	5	102	
④	1660 年(顯宗元)	儒 案		62					62	
⑤	1674 年(顯宗15)	儒 案		70			29		49	148
⑥	1675 年(肅宗元)	儒 案		70			26		64	160
⑦	1676 年(肅宗 2)	儒生案	117							117

있다.

儒案 ①~⑤를 비교해 보면 上·中·下額과 額內·額外的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다. 우선 儒案 ①과 ②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①의 上額 45명 가운데 12명이 ②의 額內에 이름이 보이고, 中額 5명, 下額 24명 가운데 각각 1명, 8명이 ②의 額外에 이름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다시 ①과 ③의 儒案을 비교해 보면 ①의 上額 가운데 11명이 ③의 額內에, 中額은 1명이 ③의 中額에, 下額은 8명이 ③의 額外에 각각 보이고 있다.

儒案 ④를 ⑤와 비교해 보자. ④에는 額內만 62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62명 가운데 ⑤의 額內에 보이는 이름이 21명이고 額外에는 한명도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儒案 ①~⑤를 비교해 본 결과 校生의 출신신분에 따라 구분되었다고 믿어지는 上·中·下額의 구별에서 上額이 額內, 中·下額이 額外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儒案 ⑥과 儒生案 ⑦(青衿錄)을 비교해 보면 ⑥의 額內 70명 가운데 58명이 ⑦에 수록되어 있음에 비해 額外 29명 가운데 ③의 青衿錄에 보이는 이름은 앞의 順天·高敞의 경우와 같이 하나도 없었다.

이상 順天·高敞·潭陽鄕校의 儒案, 靑衿錄을 비교해서 알아낸 사실은 다음과 같았다. 즉 校生이 出身身分에 따라 上額·中額·下額으로 또는 額內·額外로 구별되고 있다는 것, 그 가운데 上額이 額內, 中額·下額은 額外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上額·額內만이 靑衿錄, 赴學案에 수록되고 中·下額 또는 額外은 일체 靑衿錄, 赴學案에 수록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었다.

그러면 校生의 上額·中額·下額 또는 額內·額外의 구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1656년의 潭陽鄕校 儒案(표 3)의 ①②과 1654년에 작성된 《癸巳鄕案》<sup>16)</sup>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鄕案에는 鄕先生 1명, 3鄕 126명, 2鄕 36명 등 모두 163명의 鄕員名單이 수록되어 있다. 1650년의 儒案 ①과 비교해 보면 上額 45명 가운데 29명이 鄕案에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中額·下額으로 鄕案에 수록된 사람은 한명도 없다. 1656년의 儒案 ②과 비교해 보면 額內 69명 가운데 27명이 鄕案에 보이며 額外 30명 가운데에 한명도 향안과 일치되지 않고 있다.

潭陽地方의 鄕案에 대해서는 許筠의 「惺翁識小錄」에

오늘날 外方에는 鄕案이 있는데 반드시 內外土族만 택하여 書錄한다. 外族이나 妻가 다른 邑에서 왔으나 顯族이 아니면 비록 連官이라도 書錄될 수 없다(書錄의) 어려움이 吏曹에서 弘文錄을 친거하는 것보다 심하다. 宋公(宋純)은 潭陽人인데, 外家가 南原에서 왔으나 顯官이 없는 까닭에 公은 鄕案에 參與할 수 없었다.<sup>17)</sup>

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듯이 문벌양반만이 폐쇄적으로 入錄되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따라서 1654년의 《癸巳鄕案》에 入案된 사람들은 潭陽의 문벌양반들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儒案의 上額·額內校生만이 鄕案에 보이고 中額·下額 또는 額外校生은 鄕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곧 額內校生은 兩班, 額外校生은 非兩班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16) 潭陽鄕校所藏《鄕案》

17) 《惺所覆瓿藁》卷23 惺翁識小錄 中

있겠다.

額內校生이란 定額內的 校生을 말한다. 校生の 定額は 《經國大典》에 府·大都護府·牧은 각 90명, 都護府는 70명, 郡은 50명, 縣은 3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sup>18)</sup> 군현에서는(향교에서는) 이 定額에 맞추어 校生을 入校해야 했다. 그런데 兩班은 額內, 非兩班은 額外로 구별한 儒案에 의하면 定額 규정은 양반에게만 적용될 뿐 非兩班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듯 하다. 潭陽鄉校는 府로 校生定額이 70명인데 1650년 儒案 ①에 額內는 45명으로 훨씬 모자라고 그 이후는 60~70명으로 정액에 부합되어가고 있다(表 3) 그러나 順天은 같은 府이면서 上額(額內)이 37명에 불과하고 額外는 100명(表 1), 高敞은 縣으로 校生이 30명인데 1646년에는 23명, 1660년에는 20명으로 定額에도 못미치고 있다(表 2). 이러한 사실은 兩班만이 額內校生이 되는데 있어 실령 양반이 부족하여 定額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兩班이 아닌 신분에서 額內를 채우지는 않았으며 이들 非兩班들은 따로 額外라 하여 엄격히 구별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평민 이상이면 입교가 가능한 校生은 군현의 사정에 따라 양반이, 반대로 양반이 적으면 평민이 다수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양반과 평민이 함께 교생으로 입교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분제 사회에서 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신분에 따라 공부하는 장소, 내용, 祭禮에서의 역할, 그리고 임무로 되어있는 守直에서 차등을 두었을 것이다. 그러한 차별이 구체적으로 儒案을 작성하되 양반은 上額 또는 額內, 非兩班(서얼, 평민)은 中·下額 또는 額外로의 구별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sup>19)</sup>

18) 《經國大典》卷3 禮典 生徒條

19) 이때의 額外校生은 조선후기에 군역을 회피하기 위하여 향교에 冒屬한 額外校生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儒生과 校生이 分化되기 전의 액외교생은 같은 교생이면서도 양반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하여 정액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액외로 불리었을 뿐이었다. 非兩班身分의 교생을 액내 아닌 액외교생으로 입교시키고 있는 것은 공부를 시키고 과거를 거쳐 관료로 발탁하겠다는 목적보다는 교육, 교화를 시켜 체제에 순응하는 백성을

이러한 上·中·下額의, 額內·額外의 구분은 성균관의 上·下齋의 구분과 같은 것이었다. 成宗때 사신으로 왔던 董越의 「朝鮮賦」에

生員·進士가 기거하는 기숙사는 上齋라 부르며, 지방학교에서 진학한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는 下齋라 부른다.……지방학교에서 진학한 사람들은 지식과 재능이 뛰어난 良人들이다.<sup>20)</sup>

고 한 것, 宣祖때 栗谷의 「學校事目」에

生員과 進士 이외에도 학문에 뜻을 둔 서울의 선비들은(成均館의) 下齋 및 四學에 입학할 수 있다. 地方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士族 출신이건 한미한 가문이건 유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향교에 입학할 수 있다.<sup>21)</sup>

고 한 것처럼 성균관에서 生員·進士 이외의 학생을 定員外로 入學시키면서 下齋로 구분하고 있었다. 이는 향교의 兩班 額內校生과 非兩班 額外校生の 구별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는 것이었다.

兩班들이 校生을 외면한다는 것은 일찍부터 지적되고 있었다.

- A-① 오늘날의 校生은 모두 군역을 피한 자들이다. 士族子弟들은 業儒라 이름해서 향교에 다니지 않고 향교를 下流들의 모임처라 여기어 가기를 부끄러워 한다.<sup>22)</sup>
- ② 校生이 되는 자들 또한 모두 避役無賴漢들이기 때문에 학교가 텅빈 기구가 되었다.<sup>23)</sup>

이러한 中宗, 明宗代의 지적들은 仁祖代에 이르러서도 여전하였다.

만들고자 하려는 의도에서 였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조선신분제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이렇게 신분에 따라 額內, 額外로 구분하는 것이 15세기 후반부터 였는가, 17세기에 이르러서 였는가 하는 문제는 17세기 이전의 儒案을 찾지 못하여 단언하기가 곤란하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兩班 액내교생, 非兩班 액외교생의 구분은 15세기부터가 아니었을까 한다. (註 48)

20) 董越, 〈朝鮮賦〉

21) 《栗谷全書》卷 16 雜著 學校模範

20) 中實, 81 中宗 31, 正. 丁卯

23) 明實 8 明宗 3, 9, 癸未

外方の 校生은 嶺南 이외에는 모두 雜類이다. 높은 벼슬을 한 집안은 함께 자리하기를 부끄러워해서 鄉邑에 居住해도 校籍에 들지 않는다.<sup>24)</sup>

그리고 書院의 등장과 발달은 양반들의 鄉校賤視를 가중시켰다.<sup>25)</sup> 그러나 앞서 鄉校의 儒案에서 보았듯이 17세기 중엽에도 여전히 兩班들은 額內校生으로 入校하고 있었다. 결국 양반들은 교육기능을 상실한 향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외면한 것이지 향교에 전혀 出入도 간여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향교는 「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군현에 존재한 유일한 官學이고 孔子를 奉祀하기 위해 마련된 文廟가 소재한 公的機構였다. 따라서 군현의 상징이요, 儒學의 중심지였다. 나라에서는 향교에 대한 관심을 한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교육기능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그리고 향교의 유지와 관련된 모든 일들, 예컨대 향교의 移建, 重建, 重修, 位牌의 奉安과 陞黜, 祭禮에의 香祝下送 등을 禮曹에 보고하도록 하고 또 禮曹에서 주관하여 처리케 하였다. 그리하여 향교를 사사로이 移建하거나 位牌를 손상한 守令, 校任, 儒生 등은 처벌을 받았고, 심하면 군현이 降號하는 예도 있었다.<sup>26)</sup>

兩班들도 향교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校任을 선출하여 運營에 간여하였다.<sup>27)</sup> 財政의 확보, 建物 유지 등을 위하여 儒錢을 釀出하고 喜捨를 아끼지 않았다.<sup>28)</sup> 이는 향교가 學校요 儒學의 상징이었을 뿐 아니라 양반들이 모여 活動하는 향촌기구였기 때문이다.<sup>29)</sup> 양반들은 향교에 校任으로, 額內校生으로 출입하고 간여함으로써 양반임을 과시하였고, 또한

24) 仁實 14 仁祖 4, 11, 辛卯

25) 《大東野乘》卷 57 清江瑣語, 孝實 18 孝宗 8, 6, 壬辰

26) 禮曹에서 향교에 대한 제반조치 등을 모아 정리한 것이 《學校臚錄》 7 卷 (奎 12877)이다.

27) 尹熙勉, 〈朝鮮後期 鄉校校任〉《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 1986, pp. 550~551.

28) 姜大敏, 〈朝鮮後期鄉校의 財政의 基盤〉《富山史叢》 2, 1986, pp. 26~28.

29) 「念學校者 聖潮所在 多士所會 實教化風俗之本也」(仁實 仁祖 14, 4, 12, 乙卯)

향교에 간여하고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양반임을 인정받는 일이었다. 후기의 기록이지만

B-① 西北地方은 본디 弓馬의 고을인데 習俗이 점점 옛과 같지 않아 儒林이라 칭하고 校院에 출입하면 이윳과 고을에서 士族으로 존경하고 그 子孫들은 모두 軍役을 면하고 있다.<sup>30)</sup>

② 嶺南은 學宮을 仕宦으로 여기고 學宮에서의 나이대로의 서열은 높은 門閥을 가리키는 것이다.<sup>31)</sup>

라고 한 그대로였다.

그런데 仁祖 이후 양반들이 額內校生 入校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내저 州縣의 校生 모두는 꼭 士族이 아니다. 良民으로 避役한 무리들도 많다. ……三南地方에 이르러 보면 校案에 있는 것은 거의 전부 士族이다.<sup>32)</sup>

고 한 것과,

嶺南은 額內校生이 모두 士族, 額外는 조금 신분이 낮고, 湖南은 額外校生은 士族, 額內는 조금 신분이 낮으며 나머지 6道는 모두 湖南의 額內와 같(이 稍卑하)다.<sup>33)</sup>

고 한 것은 兩班은 額內, 非兩班은 額外校生이었던 사실과 함께, 지역에 따라 이러한 관례가 점차 허물어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양반들의 額內校生 회피는 嶺南, 湖南을 제외한 他道에서 먼저 일어난 것 같다. 다음의 記事를 참고하여 보자.

C-① 8道중에 嶺南이 學校의 중요함을 조금 알아 자못 鄒魯의 遺習이 있다.

그 나머지(道)는 校生이라 한 것을 모두 賤惡하여 士族의 아들들은 모두(교생에) 속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sup>34)</sup>

② (忠淸道) 各邑의 品官子弟들은 業儒라 이름하면서 오히려 향교에 속하기

30) 備 178 正祖 15, 正, 1

31) 「杏下述」 卞疏草本 16條

32) 仁實 14 仁祖 4, 8, 己酉

33) 仁實 14 仁祖 4, 11, 庚寅

34) 仁實 14 仁祖 4, 12, 乙卯

를 부끄럽게 여긴다. 그리하여 書院儒生, 方外儒生이라 칭한다. 그리고 百姓의 자식과 兩班庶孽 약간명을 校案에 올리게 한다.……兩南의 각 읍에는 額內, 額外校生, 童蒙으로 구별하고 있고 儒라고 이름한 자들은 모두 校籍에 올리고 있다.<sup>35)</sup>

- ③ 兩南의 兩班들은 校籍에 많이 속해있다. 그러나 湖西·京畿·他道の 소위 兩班이라 하는 자들은 校案에 들지 않으니 校生은 모두 雜類들이다. 이같은 무리들을 額內校生이라 부르고 軍役に 汰定하지 않고, 兩南의 兩班들이 校籍의 額數外에 있다고 軍役に 汰定하면 어찌 억울함이 없겠는가.<sup>36)</sup>

17세기 중엽의 이같은 예는 兩班 대신 非兩班이 額內校生이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각 군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孝宗 7년 7월 參贊官 申濡도

校生の 額內, 額外 칭호는 각 읍마다 같지 않다.<sup>37)</sup>

고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嶺南, 湖南도 양반들의 額內校生 入校가 변해가고 있었다. 孝宗 2년 7월 大司成 黃戾의 啓에

諸道の 校生은 모두 平民, 庶孽의 자손이고 世閥士族은 전혀 없습니다. 일찍이 들컨대 兩南의 校籍에 士族이 자못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 점점 건과 같지 않아 雜類들을 허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士風이 날로 퇴폐하고 弊習이 더욱 고질이 되어 校生이라는 이름을 사람들 모두 천시하여 선비로서 대우하지 않고 있습니다.<sup>38)</sup>

라고 지적한 대로였다.

이제 양반들은 額內校生 대신 靑衿儒生이라 불리우고 따로 靑衿錄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額內校生은 平民, 庶孽 등 非兩班이 차지하게 되었다. 仁祖 27년 3월의 江原監司 柳碩의 狀啓에

35) 《學校謄錄》卷1 辛巳(仁祖 19년) 7월 3일

36) 備 18 孝宗 7, 7, 21

37) 上 同

38) 孝實 7 孝宗 2, 7, 癸卯

嶺西의 각 읍에서는 校生들은 모두 無咎한 平民들의 자식들과 許通하지 않은 서얼들이 入屬成案하고 있으며 소위 양반벌열의 자제들은 죽기로서 향교의 정원으로 속하기를 피합니다. 향교에 出入하는데 上齋 혹은 東齋라 칭하면서 校生을 奴僕처럼 보고 그들과 함께 작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sup>39)</sup>

라고 한 것은 바로 東齋儒生은 양반, 西齋校生은 서얼·평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西齋校生과 額外校生은 「군역을 모면해 보기 위해 향교에 함부로 入屬한 무리들로 常漢과 다름없는 부류들」<sup>40)</sup>이라는 지적대로 전처럼 양반이 額內, 非兩班은 額外가 아니고 額內, 額外校生 모두 非兩班으로 채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兩班들이 額內校生을 서얼·평민들에게 내어주고 그 대신 靑衿錄을 따로 작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개재되어 있었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仁祖代의 校生考講施行에 있었다고 생각된다.<sup>41)</sup>

校生에 대한 考講은 勸學, 勸課에 목적을 둔 것으로 조선초부터 행해지고 있었다.<sup>42)</sup> 그러나 향교교육의 쇠퇴, 敎官의 무능, 양반들이 향교교육의면으로 考講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校生考講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仁祖때였다. 收布制로 바뀐 군역제도에서는 良役人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더구나 淸과의 심각한 대립관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軍額確保가 중요한 현안문제였기 때문이다.

仁祖 4년 閏 6월에 제정된 「軍政事目」에 校生考講에 대한 원칙이 제정되었다. 이 事目이 전해지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가 事目을 놓고 벌이는 論議를 통하여 대강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것은 落講한 校生을 신분에 구애없이 軍役に 충당한다는 것이고, 이는 祖宗朝의 法制였다는 점을 들어 정당화한 것이었다.<sup>43)</sup> 그리고 이때의 考講對象

39) 《學校臚錄》卷1 己丑(仁祖 27년) 3월 26일

40) 上同, 丙戌(仁祖 24년) 正月 6일

41) 校生考講에 대해서는 別稿를 준비중이다. 여기서는 考講의 대상범위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는데 그치겠다.

42) 《經國大典》卷3 禮典 生徒條

43) 仁實 14 仁祖 4, 11, 庚寅

은 서울의 四部學堂 學生, 地方의 額內, 額外校生이었고<sup>44)</sup> 또한 士族의 有蔭子弟로 학교에 未入學한 業儒도 포함되어 있었다.<sup>45)</sup>

그러나 兩班의 자제들을 고강하여 곧바로 군역에 충당하는 것은 그들을 死地로 몰아넣는 일과 다름없으며<sup>46)</sup> 良人과 같은 처지로 만드는 것<sup>47)</sup>이라 주장하면서 신분의 특혜를 고수하려는 兩班官僚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다.<sup>48)</sup> 그리하여 논란 끝에 四部學生은 원래 考講이 없었다는 이유로 우선 고강대상에서 제외되었다.<sup>49)</sup> 아울러 有蔭子弟인 業儒도 고강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된다.<sup>50)</sup>

그러나 地方의 校生은 祖宗朝 이래 考講을 해왔으니까 考講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관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다만 額內, 額外校生の 신분이 다름으로 落講하면 모두 充軍할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두어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논란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음의 記事를 보도록 하자.

D-① 대저 州縣의 校生 모두 士族은 꼭 아닙니다. 良民으로 避役한 무리들

44) 上 同

45) 仁實 4, 仁祖 4, 12, 庚戌

46) 仁實 14 仁祖 4, 8, 己酉

47) 仁實 14 仁祖 4, 11, 庚寅

48) 仁祖初年の 校生考講論議를 통하여 조선시대 신분제-양반제도-의 확립을 검토한 것이 崔永浩, 「幼學·學生·校生攷」《歷史學報》 101, 1984이다. 氏는 신분에 따라 落講校生の 처리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당시 관료들의 의견에 주목하여 17세기에 이르러 조선의 양반제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仁祖代의 考講의 대상은 額內外 校生 뿐 아니라 四學의 儒生, 業儒 등도 포함된 광범위한 것이었고, 논란 끝에 士族은 勿講하라는 결론속에 四學의 儒生, 業儒는 고강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仁實 14 仁祖 4, 12, 戊辰) 그런데 地方의 校生은 고강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속에 다만 校生の 신분에 따라 양반교생이 낙강하면 定軍하느냐 罰布로 하느냐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7세기의 낙강교생처리를 놓고 조선의 양반제 성립을 헤아려본다는 것은 빛나간 시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士族勿講이라 하여 四學의 儒生, 業儒가 考講에서 제외되었던 것은 이미 17세기 이전 에 士族이라는 신분계층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49) 仁實 14 仁祖 4, 12, 戊辰

50) 仁實 15 仁祖 5, 正. 丙子

도 많습니다. 落講하면 軍保에 충당한다는 것은 그들 역시 알고 있습니다. …士族之類가 분명하면 軍保도 정하지 말고 혹 落講收布라 이름하거나 혹 다른 명목으로 하여 하나는 軍은 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는 민심을 위로하게 하옵소서.<sup>51)</sup>

② 각도의 풍속에 따라 스스로 等第를 나누게 해서 신분이 조금 낮은 校生은 落講하면 軍役に 정하고, 높은 벼슬을 한 집안은 낙강하면 단지 罰布를 내게하고 軍役에는 정하지 말았으면 합니다.<sup>52)</sup>

이는 물론 양반들의 신분적 특권을 옹호하고자 한 것이었다. 결국 논란 끝에 落講校生은 신분구별없이 3년 동안 收布하고, 다시 考講을 해서 그때도 落講하면 充軍한다는 折衷案이 채택되었다.<sup>53)</sup>

그 후 丙子亂이 지나고 仁祖 22년에 제정된 「校生考講事目」에는 額內·額外校生 모두 考講하고 落講하면 罰布 대신 武學에 降定하고, 3년 뒤에 武學試才하여 才落하면 영구히 軍保에 속하게 하는 이전보다 엄격한 내용이 규정되었고,<sup>54)</sup> 실제 落講者를 武學降定하고, 充軍하는 조치가 顯宗代까지 실행되었다.<sup>55)</sup>

신분에 구애없이 額內外 校生을 모두 考講한 것은 결과적으로 양반들의 額內校生 회피를 초래하였다. 仁祖 19년 7월 忠淸監司 鄭良弼의 狀啓에

各邑品官의子弟들은 業儒라 이름하고 오히려 향교에 속하기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혹 書院儒生, 方外儒生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百姓의 자식과 양반서얼 약간명을 校案에 올립니다. 이는 品官子弟들이 考講을 피하기 위해 (校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百姓의 자식들은 避役을 위해 冒屬하는 것입니다.<sup>56)</sup>

고 한 지적, 백년 뒤인 英祖 元年 4월 同知 金始聲의 上疏에

各邑의 校生, 院生이 매우 많은데 平民으로 軍役に 합당치 않은 자가 없읍니다. 한번 校院에 入錄하면 閑民이 되니 良人의 不足은 이것에 연유하는 것임니

51) 仁實 14 仁祖 4, 8, 己酉

52) 仁實 14 仁祖 4, 11, 庚寅

53) 仁實 4 仁祖 4, 12, 乙卯

54) 《校生考講臚錄》(奎 12895) 順治元年 正月 29 일

55) 上同 順治 15년 4월 30 일, 7월 20 일

56) 《學校臚錄》卷 1 辛巳(仁祖 19년) 7월 3 일

다. ……臣이 들전대 中古以前の 列邑의 校籍에는 모두 兩班, 業儒가 入錄하여 朔望의 焚香, 春秋의 享祀를 하였는데 그 후 考講定軍之法이 設行되자 양반들이 모두 피하니 오히려 이런 (피역의) 무리들이 자리를 채우게 되었고 마침내 잘못된 규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sup>67)</sup>

고 한 것은 양반들이 考講을 모면해 보기 위해 額內校生을 회피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대신 양반들은 靑衿錄을 별도로 작성하고 儒生이라 호칭하였다. 이는 成均館, 四學에서 작성하는 靑衿錄을 모방한 것이고 아울러 成均館, 四學의 儒生들이 考講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을 모방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鄉校의 靑衿錄作成은 校生考講이 強行되던 仁祖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건국의 모든 향교가 일시적으로 행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군현에 따라 道에 따라 시기의 차이가 있었다. 다음의 史料를 보도록 하자.

E-① 淸州牧에 달아 謁聖할 때에……校案을 모아 살펴보니 東齋라 칭하며 書錄한 자는 수백명, 西齋에 書錄한 자는 역시 수십명.<sup>68)</sup>

② 우선 嶺西의 額內堂長, 掌議와 淸州의 東齋堂長, 掌議등을 각기 官이 摘發하여 軍役に 降定하거나 限年停黜토록 한다.<sup>69)</sup>

③ 嶺東과 嶺西의 校生之規가 각기 다르다. 嶺西의 각읍에서는 校生들은 모두 無咎한 평민들의 자식들과 許通하지 않은 서얼들이 入屬成案하고 있으며 소위 兩班閭閻의 子弟들은 죽기로서 향교의 정원으로 속하기를 피한다. 향교에 출입하는데 上齋 혹은 東齋라 칭하고 校生을 奴僕처럼 보면서 함께 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sup>60)</sup>

湖西, 嶺西, 그리고 아마 京畿 등 서울 부근의 諸道에서는 仁祖때에 靑衿 儒生과 西齋校生이 구별되고 있었으며, 같은 道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 구별이 안된 곳도 있었다(②).

67) 承 591 英祖元. 4. 17

58) 《學校騰錄》卷1 丙戌(仁祖 24년) 正月 6일

59) 上 同

60) 上同 己丑(仁祖 27년) 3월 26일

湖南, 嶺南의 경우는 肅宗 8년 2월 右議政 李尙眞의 啓에

영남, 호남은 兩班들이 額內校生, 中人, 庶孽들은 額外校生이 됩니다. 湖西는 中人, 庶人, 庶孽들이 校生이 되고 兩班는 靑衿錄이라 칭합니다. 京圻, 京中은 中人, 庶孽들이 교생이 되고 兩班들은 儒林이라 칭합니다.<sup>61)</sup>

고 하였듯이 他道와 달리 여전히 양반이 액내, 中人, 平民은 액외교생의 관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되어있다. 그러나 湖南은 仁祖때에 이미 額內校生이 微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sup>62)</sup> 嶺南도 仁祖 24년에 「鄕校入籍儒生 毋論額內外 齊會行禮」<sup>63)</sup>라는 表現으로 보아 他道와 별차이 없어 일찍부터 靑衿錄이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肅宗 4년의 丹城戶籍, 肅宗 16년의 大丘府戶籍에 보이는 교생의 신분을 조사해 보아도 일부 單兩양반외에는 모두 서얼, 평민출신이었다.<sup>64)</sup>

결국 靑衿錄의 작성, 곧 儒生과 校生の 分化는 仁祖代부터 시작되어 지역마다 시기의 차이는 나타나고 있었지만 늦어도 肅宗前까지는 전국의 모든 향교에서 행해지고 있었다고 하겠다.<sup>65)</sup>

兩班儒生들이 考講때문에 액내교생입교는 회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칭급록을 작성하면서까지 향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額內校生때와 마찬가지로 향교가 유일한 官學이요 文廟所在하는 儒學의 正統으로 출입 자체가 신분유지의 수단이 되고, 양반들의 활동근거지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나라의 향교에 대한 정책 때문이기도 하였다.

61) 承 284 肅宗 7, 8, 23

62) 仁實 14 仁祖 4, 11, 庚寅

63) 《學校叢錄》卷 1 丙戌(仁祖 24년) 正月 6일

64) 尹熙勉, 〈朝鮮後期 額內校生〉, pp. 22~25의(表 4, 5)

65) 조선후기의 校生이 전기의 校生과 성격이 다른 것에 주목하면서 이미 仁祖初에도 校生이라던 西齋校生을 지칭하는 풍조가 있었다고 판단한 논문이 있다. (全旻穆〈朝鮮後期 校生の 신분에 관한 재검토〉《宋俊浩教授停年紀念論叢》1987, p. 211)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仁祖初의 校生考講과 落講充軍으로 서서히 시작된 儒生과 校生の 分化가 地域의인 차이를 나타내면서 적어도 肅宗前에는 전국의 모든 향교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顯宗代 柳馨遠의 《礪溪隨錄》에 나타난 東齋兩班과 西齋庶類의 區分도 당시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조정에서는 양반들의 考講 모면을 위한 校生回避를 막기 위하여 仁祖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모색하였다.

各邑의 品官子弟로 儒生 이름으로 하는 자들은 남김없이 (향교에) 이름을 올려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도록 하되 鄉谷에 새로 流寓한 京中の 士子 이외에 土着 儒生으로 향교(교생) 入籍을 교묘히 피하는 자는 적발하여 罰講定役하고, 오는 가을 式年初試에서도 이름이 校案에 있지 않은 자에게는 都目을 '成給치 말 것을 列邑에 시행토록 하소서.<sup>66)</sup>

이러한 규제조치에 대하여 양반유생들은 鄉試아닌 漢城試에 곧장 응시하였다. 또한 戰亂으로 流離한 士子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는 시행키 어렵다는 의견에 부딪히기도 하였다.<sup>67)</sup> 그리고 과거응시의 자격부여를 전제로 모두 入校시키면 校生定額의 대변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sup>68)</sup> 그러나 丙子亂 이후의 분위기 속에서 유생들의 鄉校入籍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낙착되었다. 즉 孝宗 5년 4월에

京中儒生으로 후 靑衿錄에 入案치 않은 자, 外方儒生으로 鄉校儒籍에 입적치 않은 자는 지금부터 과거에 赴試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것을 청한다.<sup>69)</sup>

라고 하였고, 이후의 《受教輯錄》에도

儒生은 반드시 入籍한 연후에 赴試를 허락한다. 康熙 乙巳(顯宗 6년) 承傳 京中士大夫가 入籍하였다고 칭하고 鄉試에 冒赴하는 것을 禁斷하고 入格者는 합격에서 제외한다. 康熙 戊午年(肅宗 4년) 承傳.<sup>70)</sup>

라고 재규정되었다. 결국 양반유생들의 靑衿錄作成은 科擧應試 자격 때문이었다. 宣祖 15년에 栗谷이 작성한 「學校模範」에도 학교에 名簿를 두지 않는 자는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sup>71)</sup> 이로보아, 양반들

66) 《學校謄錄》卷1 辛巳(仁祖 19년) 7월 3일

67) 上 同

68) 孝實 7 孝宗 2, 7, 癸卯

69) 孝實 12 孝宗 5, 4, 己丑, 《學校謄錄》卷2 甲午(孝宗 5년) 4월 29, 30일

70) 《受教輯錄》卷3 禮典 科擧, 《編大典》에도 「凡外方科試儒生 必以入籍者許赴(卷3 禮典 諸科)로 규정되어 있다.

이 교육기능이 상실된 향교에 額內校生으로, 校生考講의 강화로 額內校生을 회피하면서도 靑衿錄을 작성하고 靑衿儒生으로 入案한 것도 나라에서 향교교육 회복책의 하나로 고안한 科擧應試資格賦與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 Ⅲ. 靑衿錄의 入案方法

양반들이 東齋儒生(靑衿儒生)이라는 이름으로 靑衿錄에 入案할 때 어떠한 자격이 요구되었으며 그 節次는 어떠한이었을까. 靑衿錄 入案方法은 향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고 생각된다. 《雜同散異》 鄉校約令에

春秋의 석전제를 지내는 모임에 여러 儒生들이 각각 門閥子弟를 천거하는데 人員에 구애됨이 없이 可否를 통하여 入錄시키는 것이 州縣의 例規였다.<sup>72)</sup>

라고 한 것처럼 儒生들이 문벌자제를 천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鄉案의 入錄方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예를 들면 각 군현의 鄉案에

F-① 春秋의 講信日에 每員이 각각 內外顯族者로 30세 이상인 사람 한명을 천거하는데 10명에서 9명이상 可하면 향안 참여를 허락한다.<sup>73)</sup>

② 春秋의 慶老宮大會때 鄉員이 각각 新參 한사람씩 천거하고 可否를 통하여 향안 참여를 허락한다. 천거한 자는 반드시 三鄉을 살피고 否가 셋이상이면 허락하지 말며 잘못 천거한 자는 향안에서 쫓아낼 것.<sup>74)</sup>

③ 春秋鄉會時에 새로 천거되는 사람은 可否를 통해 鄉案에 올리는 데 10員이 모여서 否가 하나이거나 15員에 否가 둘이면 不書한다.<sup>75)</sup>

71) 《粟谷全書》卷 14 雜著〈學校模範〉

72) 正祖 2년 安鼎福이 木川縣監으로 재임하던 때에 靑衿錄을 놓고 고을의 士族과 鄉族의 대립이 발생한바 있었다. 이 사건을 調劑形式으로 해결한 뒤에 그는 이 鄉校約令을 작성하였다. 이때의 約令은 간략하였는데(《木州政事》司馬所節目), 그후의 《雜同散異》에 들어있는 향교약령은 보충·보완한 결과 내용이 다소 풍부해졌다. 이 約令은 安鼎福의 독창적 고안이라기 보다는 이전의 관례, 또한 현행의 관례를 참작하거나 재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라고 한 것처럼, 靑衿錄도 유생들의 천거와 可否數(비율)로 入案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靑衿錄의 入案이 천거에 의한 것이지만 향안처럼 문벌의 하자 여부만이 절대조건은 아니었다. 학교기관이었던 만큼 知識의 유무도 아울러 고려되었다. 《雜同散異》 鄕校約令에 다음과 같이 試才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試才하여 선비를 취하는데 25세에 들어와 55세에 물러난다.

式年의 예에 의하면 子歲에는 詩賦를 卯歲에는 賦策을 午歲에는 疑義를 酉歲에는 論策을 出題한다.

3下以上을 入格한 사람을 취해 額内外의 수를 채운다. 공부하지 않은 자는 비록 名家子弟라도 冒錄하지 못한다.<sup>76)</sup>

이렇게 나이를 제한하고, 試才에 합격해야 入案시킨 것은 靑衿錄이 향교라는 학교기관의 학생명부이었고, 儒生을 명목적이거나 과거준비하는 학생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薦學, 試才라는 入案節次는 청금록의 작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양반들이 額内校生으로 入學하였던 때에도 적용되었던 절차였다. 栗谷의 『學校模範』에

지방에서는 문벌이 높은 집안이나 낮은 집안을 막론하고 儒學하는 자는 향교로 들어가게 한다. 처음 입학할 때는 생도 열사람이 그의 학문에 뜻있음을 추천한 뒤 시험하여 入學을 허가한다.

지방의 큰읍에서도 역시 시험을 보여 그 정원을 충족시키되……만일 글에 능한 자가 부족할 때에는 정원수가 차지 않더라도 글에 능한 자만을 정원으로 삼는다…<sup>77)</sup>

라고 한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결국 천거와 시험의 과정을 거치는 靑

73) 《嶺南鄕校約資料集成》 密陽郡 「鄕憲」 p. 441.

74) 《上同》 咸陽郡 安義鄕案 鄕中立議 p. 488.

75) 懷仁鄕校所藏《鄕案》

76) 《雜同散異》 鄕校約令 靑衿錄

77) 《栗谷全書》 卷6 雜著 學校模範



에 소장되어 있는 靑衿錄의 유생수를 일부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4〉에서 보듯 靑衿儒生의 수는 같은 등급이 군현이라도 제각기 다르고 또한 시대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이는 靑衿儒生에게는 정액이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鄉校의 靑衿儒生의 수는 각 군현의 양반의 수효와 활동여부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 밖에 없었다.

〈表 4〉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는 儒生의 數가 시대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로 19세기에 이르러서는 靑衿錄이 작성되지 않은 현상이다.<sup>81)</sup> 儒生의 증가는 肅宗 중엽 이후 18세기에 걸쳐 각 향교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이는 당시 鄉案入錄者의 급격한 증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향안입록자의 증가는 兩班人口의 자연증가로 이해되기 보다는<sup>82)</sup> 이 당시 戶布, 丁布, 口錢論 등 양반에게 균역을 부과하려는 양역변통논의와 관련된다 하겠다.<sup>83)</sup> 곧 양반들은 균역을 모면할 대책을 모색하여 양반임을 입증해 주는 鄉案에 집중적으로 入錄하였기 때문이다. 靑衿錄의 入案增加도 양반유생임을 나타내려는 의도의 소산이었다고 하겠고 결국 兩班士族의 保守化努力의 결과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靑衿錄 入案儒生의 증가는 靑衿錄作成 의미를 퇴색시켰다. 門閥과 試才의 절차를 엄격히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뿐 아니라 수백명이 넘는 儒生들의 명단을 매번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sup>84)</sup> 그

78) 《號牌事目》(仁祖 3년)(奎 12344)

79) 《務安鄉校誌》卷 1 儒生

80) 《全南의 鄉校》 각향교 및 《高敞鄉校誌》 참조

81) 靑衿錄이 19세기 이후에도 계속 작성되었으나 현존하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이전의 靑衿錄은 남아있는데 19세기 이후의 것만 없어졌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靑衿錄과 대조적으로 西齋案(校生案)은 19세기말까지 계속 작성되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더욱 그렇게 판단된다.

82) 川島藤也, 〈A Study of Hyangan〉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V. 5, 1985.

83) 金仁杰, 〈조선후기 鄉案의 性格變化와 在地士族〉 《金哲俊博士華甲紀念論叢》 1985, pp. 545~6.

84) 入錄者의 急增에 따라 鄉案作成이 무의미하게 된 것과 같은 현상이라 하겠

러나 靑衿錄의 성격변화를 궁극적으로는 폐기를 가져온 것은 入案增加 때 문만은 아니었다. 儒生增加와 병행하여 청금록의 入案을 놓고 士族들간의 대립이 있었고 또한 이전에 청금록에 제외되었던 鄉族과 庶孽들이 청금록에 入案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우선 士族間의 대립은 집안간의 또는 黨色間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집안간의 대립은 향교보다는 書院, 祠宇의 설립, 主·配享을 놓고 다투는 것이 보통의 예라 하겠고 향교의 경우는 대개 당색간의 대립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관련된 다음의 史料를 보도록 하자.

G-① 安東의 鄉權은 나라에서 빼앗고자 하여도 불가능합니다. 소위 西人의 무리들은 鄉校에 발조차 들일 수 없을 만큼 情跡이 어긋나 있고 별도로 몸을 맡길 곳을 세우려 하여도 南人이 재산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sup>85)</sup>

② 盈德이 故家大族은 모두 南人이고 소위 新鄉은 西人임을 자칭합니다. 근래 西人이 學宮에서 일을 마음대로 하려고 舊鄉과 서로 다투었습니다.<sup>86)</sup>

이러한 당색간의 대립은 당쟁의 격화로 더욱 첨예화되었다. 그리고 黨色の 反目에 따라 靑衿錄의 割籍, 削籍이 일어나고 있었다.<sup>87)</sup> 그러나 黨色間의, 門人, 後孫間의 대립,<sup>88)</sup> 主·配享順位,<sup>89)</sup> 심지어 同色間의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대립이 치열한<sup>90)</sup> 書院과 달리 鄉校는 한 고을의 양반이 당색 여부와 큰 관계없이 공동으로 출입하는 곳이었다. 또한 靑衿錄이 한 黨色の 獨占物이 아님을 생각해 볼 때 士族間의 대립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士族과 이전에 청금록에 배제되었던 鄉族, 庶孽들과의 대립이 더 심각했고 이

다. (川島藤也, <丹城鄉案에 대하여>《清溪史學》4, 1987, p. 204)

85) 承 875 英祖 14, 7, 16

86) 英實 65 英祖 23, 6, 甲戌

87) 顯實 3 顯宗元, 11, 甲寅, 乙未

88) 鄭萬祚, <英祖 14년의 安東金尙憲書院 建立是非>《韓國學研究》1, 1982.

89) 申爽鎬, <屏虎是非について>《靑丘學叢》1, 3, 1930, 31

90) 金東洙, <書院通文의 公論性과 書院의 政治勢力化의 要因>《歷史學研究》10, 1981.

에 따라 향교내에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조선후기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上層平民들은 冒稱幼學, 僞譜, 賣譜, 僞戶籍, 納粟 등의 방법을 통하여 양반신분으로 발돋움하려 하였다. 兩班의 品階를 획득하여 鄉曲品官, 鄉品 등으로 불리운 이들 新興兩班들은 京在所 혁과, 營將事目 등으로 인하여 地方官의 보좌기구로 성격이 변한 鄉廳의 鄉任을 兩班士族들 대신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士族과 비교하여 鄉族이라 불리웠다.

士族들이 鄉案을 고수하고 校任, 院任 등에 치중하였던 것에 비해 鄉族들은 守令과 결탁하고 鄉任에 치중하면서 鄉村에서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였다. 鄉族들은 더 나아가 士族들의 전유물이었던 鄉案에 入錄하려고 하였음은<sup>91)</sup> 물론 향교의 靑衿錄에도 入案하여 향촌에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鄉族의 靑衿錄 入案은 수령, 향리들의 처부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賣任, 賣校라는 것이 그것이었다.<sup>92)</sup> 그러나 청금록은 향안과 달리 학교기구의 유생명부이기 때문에 수령, 향리들의 冒錄은 매우 드물고, 또한 부분적인 문제였다. 정작 청금록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은 향족들이 入案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나서서 鄉戰으로까지 발전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실례로 正祖 元年(1777년) 忠淸道 木川縣의 예를 보도록 하자.<sup>93)</sup>

문제의 발단은 靑衿錄에 暗錄했다고 혐의를 받은 鄉族의 先祖를 士族들이 割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己卯年( ? ) 以前의 청금록에는 庾姓인 儒生이 입안된 적이 없었는데, 중간에 庾陽賢, 庾信輔 및 閑散人 9명이 校任에게 뇌물을 바치고 暗錄하였다고 주장하고 甲午年(1774년) 春享齊

91) 田川孝三, 〈鄉案について〉《山本博士還曆紀念東洋史論叢》, 1973, 金仁杰, 〈朝鮮後期 鄉權의 推移와 지배층 동향〉《韓國文化》2, 1981.

92) 備 228 憲宗 6, 9, 14  
《關西良役實摺》啓下條件 6장 등

93) 이하의 서술은 《木州政事》의 論本邑士林削黜庾哥靑衿錄報狀(丁酉, 正月 十六日), 庾哥事更查後論報狀(丁酉, 正月 二十八日)을 정리한 것이다.

會때 儒林들이 이들 이름을 삭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른 삭제자의 자손들은 순종하였는데 유독 庾氏들은 6代祖 庾陽賢, 5代祖 庾信輔는 전부터 청금록에 입안되었으며 중간에 子孫들이 한미해져 청금록에 입안되지 못한 것 때문에 士林들의 능멸을 받고 盜削까지 당한 것이라고 수령에게 호소하였다. 수령은 時任把掾을 지내는 庾氏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삭제를 주장한 校任들을 처벌하자 校任들의 宗族들이 儒生들의 齊會를 거처지도 않고 다시 庚代들은 다시 이름을 올려주고 일을 무마하였다.

3년 뒤인 丁酉年(1777년) 安鼎福이 縣監으로 재직할 때에 다시 削錄이 일어났다. 春享祭會때 校任들이 전번의 削錄에 대한 교임처벌은 억울하다, 庾哥들과 同列로 있는 것은 치욕이다는 이유를 들어 재차 削錄하였다.

庾氏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중간에 자손들이 한미해져 현재 자신들은 把掾, 風憲, 選武軍官 등을 지내고 있지만 10代祖는 吏判, 9代祖는 仁祖때 木川縣監, 6代祖는 司瓮直長을 지낸 바 있던 門閥世族으로 선조들이 청금록에 입안하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士林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선조들이 吏判, 直長을 지냈다고 하는데 後孫들이 어떻게 양반의 지위도 유지하지 못할 수가 있는가. 仁祖代 縣監을 지냈다면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인데 과연 연대로 보아 9代祖가 될 수 있겠는가 등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族이 번성하고 부유해서 군색한 土班들이 혼인을 맺고 있음에 고무된 庾哥들이 이제 土流가 되어 보려고 뇌물을 바치고 청금록에 暗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었다.

守令(안정복)과 士林, 庾氏들이 함께 청금록을 조사하였으나 庾姓이 나이순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금록의 卷末에 기재되어 있고 또한 把掾, 選武軍官은 下品閑散들이 맡는 것이라는 점등으로 미루어 暗錄의 가능성은 큰 것이었지만 정확히 밝혀내기는 곤란하였다. 양자의 주장이 모두 一理가 있고 세력도 팽팽히 맞서는 관계로 해서 (一勝一負) 결국 直長의 후손임은 틀림이 없으니 庾陽賢, 庾信輔를 옛날 靑衿錄에 選錄하고, 孝子 庾德泰는 士林도 동의했으니 현재의 청금록에 入案하는 정도의 調劑로 낙착되었

다.<sup>94)</sup> 이 木川縣의 청금록 문제는 鄉族이 옛날의 청금록에 자기들의 祖先이 들어있으니 현재의 청금록에도 入案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靑衿錄을 둘러싼 士族과 鄉族의 대립, 그리고 鄉族의 집요한 노력의 한 면을 잘 나타내 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鄉族 한 집안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군현에 향족 전체가 靑衿錄 入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英祖 51년 3월 御史 南絳老의 보고에

臣이 抱川의 일을 여러가지로 생각해 보건대 이번 일은 다름이 아니오라 儒·鄉이 서로 대립한 까닭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합니다. 臣이 돌아올 적에 鄉族으로 冠을 쓴 자 30, 40인이 길을 막으며 말하기를 ‘소위 儒林들이 鄉族을 멸시하여 업신여기고 鄉族의子是 비록 글에 능하더라도 儒林에 끼워주지 않으니, 만약 楊州, 永平의 예에 따라 儒鄉合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청하니 무릇 儒·鄉이 서로 대립하면 鄉戰의 폐는 그 기세를 금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후에는 儒鄉을 通用하는 뜻을 분부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sup>95)</sup>

고 한 것처럼 楊州, 永平의 예를 들어 抱川의 鄉族들이 儒林(士族)과의 合席을, 즉 청금록의 合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때 士族이 독점하여 왔던 청금록에 鄉族이 공공연히 入案을 시도하고 또 실제 士族의 세력여하에 따라 士族과 鄉族이 合錄하는 군현도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靑衿錄 入錄을 놓고 兩班士族들과 대립을 벌였던 것은 鄉族 뿐만 아니라 庶孽도 있었다. 조선후기에 서얼들의 許通 요구는 점차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되어갔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상소하여 서얼차대의 부당함을 호소하였고<sup>96)</sup> 그 결과 納米許通도 폐지시켰다.<sup>97)</sup> 더 나아가 서얼들은 조정에서의 淸要職 防塞의 폐지, 지방에서의 鄉案入錄, 校院의 청금록 입

94) 《木川縣誌》人物 蔭仕에는 庚陽賢과 庚德泰 두 사람이 수록되어 있다.

95) 承 1361 英祖 51, 3, 1

96) 《葵史》卷1 肅宗 21년 嶺南生員 南極井等 981人上疏

97) 肅實 30 肅宗 22, 8, 丙戌

안을 요구하였다. 英祖 48년 12월 경상도 서얼유생 全聖天 등 3000여명이 군현에서 三所之案(향안, 향교, 서원의 청금록)에의 入案과 향교에서의 序齒를 요구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sup>98)</sup>

조정에서는 正祖 元年 3월에 庶孽疏通節目을 발표하였다.<sup>99)</sup> 그리고 純祖 23년 11월에도 疏通節目을 발표하였다.<sup>100)</sup> 이러한 節目의 발표로 서얼들의 지위는 조금씩 개선되었다.<sup>101)</sup> 地方의 儒任·鄉任도 점차 서얼들에게 허용되어가고 있었다.<sup>102)</sup>

서얼에 대한 조정의 배려는 계속되었지만 양반관료들은 소극적 태도를 취하였다. 관료들은 나라에서 鄉黨의 일을 간섭하여 향촌의 폐해를 불러 일으킬까 두렵다고 토로하고 군현이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하자면서 난색을 표하기도 하였다.<sup>103)</sup> 兩班士族들도 서얼들의 청금록 입안을 완강히 반대하였다. 士族들은 서얼들의 청금록 입안요구를 鄉戰之計로 몰아부치거나<sup>104)</sup> 大學通文을 빌미로<sup>105)</sup> 심지어는 통문을 위조하면서<sup>106)</sup> 서얼들의 入案을 막으려 하였다. 그리고 청금록에 입안된 서얼을 割籍해 버리는 일도 있었다.<sup>107)</sup>

양반사족들의 서얼의 청금록 입안 반대와 병행하여 서얼들의 노력도 집요하였다. 조정에 집단상소를 계속하여 疏通節目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98) 英實 119 英祖 48, 12, 戊子, 《葵史》卷1 英祖 48년 12월 嶺南進士 全性天等上疏許同錄校院儒案

99) 正實 3 正祖元, 3, 丁亥(丁酉節目이라 한다)

100) 純實 23 純祖 23, 11, 丙子(癸未節目이라 한다)

101) 純祖 23년 癸未疏通에서는 서얼에게 從 2品, 牧使까지 허용하였고, 哲宗 元年 辛亥疏通에서는 槐院, 宣傳官을 허용하였다. 이로써 서얼들의 通清要求는 달성되었던 것이다. (韓永愚, <조선후기 中人에 대하여>《韓國學報》45, 1986, p. 89)

102) 正實 3 正祖元, 3, 丁亥, 純實 23 純祖 23, 11, 丙子

103) 英實 119 英祖 48, 12, 戊子, 英實 124 英祖 51, 5, 乙丑

104) 「杏下述」卞疏草本

105) 正實 6 正祖 2, 6, 戊子

106) 純實 26 純祖 23, 7, 辛卯

107) 上同, 《葵史》卷2 純祖 23년 7월 6道儒生生員金照鏞等 9996 人上疏

을 호소하는<sup>108)</sup> 한편 심지어 朝報를 위조하면서 향교에 참여하기를 기도하였다.<sup>109)</sup>

청금록 입안을 둘러싼 양반사족과 향족, 서얼간의 대립은 치열하였다. 군현에 따라서는 향족, 서얼에게 次任인 掌議 등을 허용하기도 하였고,<sup>110)</sup> 청금록에의 입안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기록을 참고하여 보자.

H-① 聖敎로 儒錄을 고치는데 紛競의 폐단이 있을까 이를 절목에 게재하여 調鎮의 길로 삼는다. 만약 절목을 준수하지 않고 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官에서 마땅히 엄하게 처리할 것이니 모두 알아들 것.

1. 鄉案의 舊家는 모두 入錄한다.

1. 비록 鄉外라도 才行이 있으면 入錄한다.<sup>111)</sup>

② 不學者는 名家子弟라도 감히 冒錄하지 못하게 하고 勳 品官子弟라도 俊秀하고 力學하는 자로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선비들이 스스로 부지런히 노력하고 文教가 크게 흥하니 이는 실로 勸獎할 大法이다.<sup>112)</sup>

이제 靑衿錄은 兩班儒生の 전유물만은 아니었다. 향족, 서얼에게도 부분적이거나 허용되는 추세에 놓이게 되었다.<sup>113)</sup> 결국 靑衿錄은 鄉案의 운명처럼 더 이상 양반사족들의 신분을 대변해 주는 도구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청금록 유생의 숫적 증가는 청금록의 작성을 어렵게 또한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되게 하였다. 이제 19세기에 이르르면 각 향교에서는 더

108) 《藝史》卷2의 庶孽들의 일련의 上疏

109) 正實 3 正祖元, 5. 丙戌

110)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I》, 1972, p. 547 1691 번(한-51 다-96), 《고문서해제 II》 1973, p. 219 353 번(한-51 다-34)

111) 〈尙州儒案節目〉(癸巳年: 英祖 49년?) (《嶺南鄉約資料集成》, 尙州郡 p. 265). 이 節目의 年代는 확실치 않으나 英祖 49년에 서얼에게 所任을 맡기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응하여(杏下述 卜疏草本)작성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그리고 여기서 鄉外란 전에 鄉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門閥士族이 아닌 鄉族, 庶孽 등을 말한다. (田川孝三, 〈鄉案について〉, pp. 289~280)

11) 《雜同散異》 鄉校約令 靑衿錄

113) 高敞鄉校의 경우 마지막으로 작성된(남아있는) 1774년(英祖 50년)靑衿錄에는 庶孽, 庶族 3명이 처음으로 入案되어 있다고 한다. (崔允櫟, 앞의 논문, p. 284)

이상 청금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이전의 청금록은 향교에 잘 보관되어 향촌에서 士族의 후예임을 立證해 주는 증거로 이용되었다.<sup>114)</sup>

兩班士族들은 청금록 폐기 이후 별도의 錄, 案을 작성하여 청금록에 대신하였다.

赴學案이라는 名籍이 있다. 儒(林)과 品(官)을 함께 資錄한다. 一說에 의하면 士族, 品官을 논하지 않고 赴學案에 들어있는 사람은 모두 靑衿錄에 許入하고 별도로 齋任薦案이라는 이름의 名籍을 만든다. 춘추의 석전제 모임에 士族 10人을 (齋任薦案에서) 가려뽑아서 齋任을 돌아가면서 내린다. 천거된 자와 齋任이 함께 (석전제에) 자리를 하면 수년이 못되어서 儒林과 品官이 '스스로 분별될 것이니 하필 분쟁과 다툼으로 淸厚한 풍속을 손상시킬 것이있겠는가.<sup>115)</sup>

이는 청금록과는 별도로 科擧應試儒生의 명단을 담은 赴學案을 근거로 하여 校任을 천거할 齋任薦案을 작성하고 校任을 선발한 것을 말한다. 즉 品官(鄉名, 鄉曲品官)들이 유교적 교양이 적어 과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는 한편 士族들이 校任을 독점하여서 향족의 향교 참여를 막아보려는 의도였다고 하겠다. 또는

一說에 靑衿錄을 없애 버리고 단지 士族 가운데 人望있는 사람을 掌議, 色掌 등의 校任으로 삼는다. 석전제를 맞이할 때 齋任이 士族儒生 20~30人을 뽑고 (이들에게만) 통문을 내어 돌려보게 하고 기일이 닿으면 入齋하여 제사를 지낸다.<sup>116)</sup>

114) 19세기 이후에 작성되는 靑衿錄은 대개 일시적으로 만든 名案이었다. 예를 들면 1873년에 작성된 寶城鄕校《鄕校備案》의 경우

晚近 이래 淵源家は 文華가 尙絶되고 耆纒家は 鼎路가 막혔다. 옛 名家의 후예들이 말하기를 “殘門微族으로 돌아가 金玉이 瓦礫에 섞이게 되고 蘭芝가 속에 놓이게 되었으니 어찌 慨然치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噫다. 이 備案은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집의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의 어떤 집을 누가 알아 群流에서 淸濁을 구분하고 混質에서 곱고 더러움을 구별하겠는가. 전날의 증거됨을 위해 훗날의 보임을 위하여 이 안을 만드는 것이다(鄕校備案序).

라고 한 것처럼, 신분구별, 가문구별을 위해 만든 일종의 紳士錄, 縉紳錄에 불과한 것이었다.

115) 《雜同散異》鄕校約令 靑衿錄

116) 上 同

라고 하여 청금록 자체를 폐기하고 校任이 士族들만을 지명, 선발하여 향교운영에 참여케 하는 방법도 있었다. 이러한 代案들은 공통적으로 鄉族, 庶孽들의 향교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음과 동시에 이전처럼 士族中心으로 향교를 이끌어 나갈 목적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19세기 이후에 청금록을 더 이상 작성하지 않은 것은 향족, 서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士族들의 향교독점노력, 즉 保守化 움직임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겠다.

靑衿錄의 폐기 이후 兩班士族들의 향교독점노력의 예로 우선 전라도 和順鄉校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 純祖 22년(1882년)에 和順鄉校에서는 養士齋를 重修하면서 《養士齋儒案》을 작성하였다.

齋가 있는데 어찌 선비를 기르지 않겠는가. 선비가 있으니 案이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士林의 正名分, 立紀綱의 길이(儒案에) 매어있는 것이다. 儒案을 精補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서로 다른 논의가 일어나 舊案이 없어지게 되었는가. 때문에 나는 이것을 탄식하고 애석하게 여겨 배어난 인재를 모으고 부족한 인재들을 덜어내어 一定之論을 大書하였다.

고 하여 없어진 청금록을 대신하는 《養士齋儒案》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儒案의 條目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1. 鄉中의 여러 선비로 나이와 덕망이 높고 지체와 문벌이 盛해 남보다 뛰어난 사람을 官에 稟告하고 入案한다.

1. 儒(林)와 鄉(品)은 길이 나누어져 있으니(鄉品은) 가벼이 入案을 허락하지 않는다.

1. 聖廟가 가장 重大히 尊崇하는 곳이고 齋室은 가장 크게 보호육성하는 곳이니(鄉校의) 五校任과 養士齋의 兩有司는 儒案 안에서 지체와 문벌, 文事에 특히 뛰어난 선비를 稟官하여 付標하고 1년이 되면 改標한다.

1. 春秋의 大享時에의 祭官은 元案 가운데에서 각 人員을 擇하고 望報하여 맡긴다.<sup>117)</sup>

즉 《養士齋儒案》은 和順縣 내에서 兩班士族들만을 가려뽑은 또 다른 이름의 靑衿錄이었던 셈이고, 또한 兩班士族들만의 校任, 祭官獨占, 궁극적으

117) 和順鄉校, 《養士齋儒案》(《全南의 鄉校》 pp. 957~959)

로 향교독점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兩班士族들의 향교독점노력의 또 다른 예로 求禮鄉校의 《靑襟稷案》을 살펴보면 하자. 憲宗 5년(1839년)에 結稷된 靑襟稷員의 자격은 다음과 같았다.

一. 靑襟案子孫 가운데 일찌기 校任을 지낸 바 있는 사람만 차례대로 이름을 나란히 적어 案을 작성한다.

一. 稷員이 죽으면 그 子孫이 校任을 지내고(나서) 改案을 하고 入案시킨다.<sup>118)</sup>

즉 靑襟稷員은 이전 청금록에 入案된 사람들의 자손 가운데 校任을 역임한, 곧 양반사족임을 자타가 공인한 사람들만이 자격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士族 이외에 향족이나 서얼들이 참여할 길은 없는 셈이었다. 靑襟稷員의 활동은 喪中의 賻助, 大小科應試에 금전보조, 매년 부채와 달력의 배부, 冠帶, 轎子, 遮日의 대여, 新任校任焚香時의 貫馬 등 契員간의 相助가 주된 것이었다. 그리고 활동의 경제적 문제는 校田을 매각한 돈 20兩을 存本利殖함으로써 충당하였다.<sup>119)</sup> 결국 求禮鄉校의 靑襟稷는 청금안 파기 이후 양반사족들 가운데 前任校任들만 結契해서 相助活動을 하였고, 더 나아가 長老로서 향교운영에 간여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담당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선후기 특히 18~19세기에 이르면 鄉案이 파기되어 士族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 것과 같이 향교에서도 청금록이 더 이상 작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鄉案과 달리 향교는 꾸준히 士族中心으로 운영되고 또 그렇게 시도되었던 것이다. 이는 鄉廳, 鄉案, 書院 등의 變質과 붕괴로 말미암아 향교가 士族들에게 마지막 활동장소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士族들은 名

118) 求禮鄉校所藏, 《靑襟稷案》, 구례 향교에는 1839년에 結契된 후 1848년, 1853년, 1857년의 4冊의 稷案이 작성되어 남아있는데, 내용은 序, 契員의 명단인 名案, 운영규칙인 節目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119) 《靑襟稷案》節目

119) 이러한 형태의 契는 일제시대에 각 향교마다 결성된 慕聖契로 바뀌어 나갔다.

分과 教化를 앞세워 이전처럼 향교를 독점하려 하였다. 그리고 향교를 이용하여 향촌사회에서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여고 노력하였다.

鄉族, 庶孽들은 신분계 변화의 조류속에서 士族들과 鄉權을 놓고 대립을 벌여나갔다. 이들은 鄉任의 독점과 함께 鄉案의 붕괴, 靑衿錄의 파괴 등을 물고오면서 士族들의 향촌에서의 지배력을 하나씩 탈취 내지 제거해 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鄉村社會의 커다란 變化였고, 또한 기존의 士族中心의 지배체계의 동요와 붕괴를 초래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鄉族, 庶孽들에게는 한계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鄉校였다고 생각된다.

鄉校는 儒學의 근거지요 教化와 名分의 中心地였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고 鄉任을 독점하고는 있었으나 儒學이 부족한, 또한 出身背景에서 士族과 同列로 설 수 없는 鄉族들에게, 禮敎主義의 名분이 있어 하자가 있는 서얼들에게 향교는 쉽게 접근을 허락치 않는 기구였다.

아직 19세기 이후에도 士族들의 향교독점이 가능하였던 것은 士族들을 압도할만한 鄉族과 서얼들이 힘과 실력이 부족하였던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결국 그들이 근대에 들어와 신학문의 조류 속에서 향교를 외면함으로써 비로소 극복하는 일이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sup>120)</sup>

## V. 맺음 말

이상의 설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후기 향교에서 靑衿錄에 入案되는 兩班을 靑衿儒生(東齋儒生), 西齋案(校生案)에 入案되는 서얼, 평민들을 西齋校生이라 부르며 구별하였다.

120) 大院君의 書院撤廢 이후에 儒學의 강화를 위해 향교를 補修하고 門閥士族으로 校任을 선발하여 成冊報告케 하였으며, 敎育의 독려를 전국의 향교에 지시한 것도 조선시대 향교의 사회적 위치 및 兩班士族과 향교와의 관계를 바탕에 두고 행한 것이라 하겠다(居昌鄉校 記文 9 辛未六月下泮禮曹關文, 咸陽鄉校 記文 142, 珍島鄉校, 齋任濟源記(《全南의 鄉校》 pp. 810~811))

원래 향교의 학생을 校生이라 하였다. 그런데 校生의 신분에 따라 兩班 校生은 額內校生 또는 上額으로, 庶孽, 平民校生은 額外校生 또는 中·下 額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仁祖代 이후가 되면 양반들은 額內校生으로의 入學을 회피하였고, 이에 서얼, 평민들이 양반대신 액내교생이 되었다. 이는 仁祖代부터 강화시행 되는 校生考講 때문이었다. 신분에 구애없이 額內外 校生 모두를 考講하여 落講하면 罰布를, 仁祖 22년부터는 武學으로 降定하는 조치에 따라 兩班들은 額內校生의 入學을 꺼려하였다. 대신 兩班들은 考講에서 제외되던 서울의 成均館儒生, 四學儒生들 처럼 靑衿錄을 작성하고 靑衿儒生이라 칭호하였다. 그리하여 대개 肅宗前까지는 전국의 모든 향교에서 儒生과 校生을 구별하고 각각의 명단을 따로 작성하게 되었다.

兩班들이 考講을 피하기 위해 儒生이라 칭호하면서도 계속 향교에 出入하고 간여한 것은 향교가 文廟가 所在하는 敎化의 中心地요, 자신들의 활동근거지였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향교에 籍을 두어야 과거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조정의 조치에 따른 것이기도 하였다.

儒生들은 兩班士族(門閥士族)들이었으며 鄉案의 경우처럼 儒生들의 천거로 靑衿錄入案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儒生은 명목적이거나 향교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천거 이외에 試才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儒生에겐 定額이 따로 없었다. 그런데 靑衿錄 入案儒生의 수는 각 향교마다 계속 증가하였고, 19세기 이후가 되면 靑衿錄은 더 이상 작성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조선후기 신분제 변동에 따라 兩班身分임을 과시 내지 입증하려는 兩班士族들의 保守的 동향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껏 靑衿錄에서 제외되었던 鄉族, 庶孽들의 집요한 入案努力과 要求때문이기도 하였다.

兩班士族들은 鄉族, 庶孽들의 入案을 防塞하기 위해 靑衿錄을 폐기하고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았다. 그 대신 兩班士族들은 別度의 名案이나 契案 등을 만들어 入錄하면서 鄉校를 계속 獨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향교는 19세기말까지 兩班士族들의 중요한 활동근거지로 활용되었던 것이다.